

32살의 나는 오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어디가? 어느 복지관에서 나왔어? 하나님은 믿어?”

마치 어린아이들 대하듯 하는 말투와 친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래, 힘내서 잘살아, 조심히 가, 에그...쯧쯧쯧...”

식당에 가면 ‘어서오세요’라는 말 대신 듣는 말이 있다.

“어서와, 어디 앉을래?”

.....

사람들은 장애인에겐 나이도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맨날 반말이야!

Mdl.36

왜, 맨날 반말이야!

– 만화로 보는 장애 차별과 인권 –



글. 김정하 / 그림. 이상운



만 · 와 · 로 · 보 · 는 · 광 · 애 · 자 · 별 · 과 · 인 · 권

왜, 맨날
반말이야!

10
A

장애우권익문화연구소
RIDRIK

여는글

일상 속에 너무 익숙한 차별이 있습니다.

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거침없이 하는 행동이,

내 머릿속 편견의 조각들이 차별이 됩니다.

사회가 차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노동현장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배제의 문화가 말입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존재하는 차별을

한방에, 아니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 책이 그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책을 만든 사람들 -

글순서

여는글_02

동글의 우상_04

❶ 월계어? 그럼 맹벌이지! – 무지에서 일어난 차별_11

월체어? 그럼 맹벌이지! / 넓게 쓰니까 따불로 내! / 왜, 맨날 반말이야!

❷ 목숨을 건 여성 – 이동할 권리에서의 차별_19

Stairway to heaven / 연쇄살인사건1 / 연쇄살인사건2

❸ 번지점프를 아다, 징애인만 빼고. – 문화양유 권리에서의 차별_25

깨어진 꿈 / 보호자분이 없으면 탑승이 곤란합니다

❹ 잊속, 장식속 옥은 돈독(毒) – 소비자 권리에서의 차별_31

의적거절 / 손님 떨어져! / 귀찮으니까 얼릉 해줘버려! / 왕(王)짜증 의사

❺ 장애를 위한 기도 – 교육권에서의 차별_39

배움의 길에 나이는 있다(?) / 장애를 위한 기도 / 비위 약한 선생님

❻ 인력시장– 노동할 권리에서의 차별_45

사회복지학의 이용배반학 / 장애인을 고용한 어느 사용자의 고민 / 업무는 정규직, 임금은 일용직 / 배려가 더 무섭다 / 인력시장 / 불을 밝혀라

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삼정권에서의 차별_59

빼앗긴 참정권 / 시설에서의 대리투표

❽ 제복의 공포 – 영사장 권리에서의 차별_65

제복의 공포 / 니가 다해요(조사관=대독자=도장찍는 사람)

❾ 나는 살고 싶다 – 신체자유 권리에서의 침해_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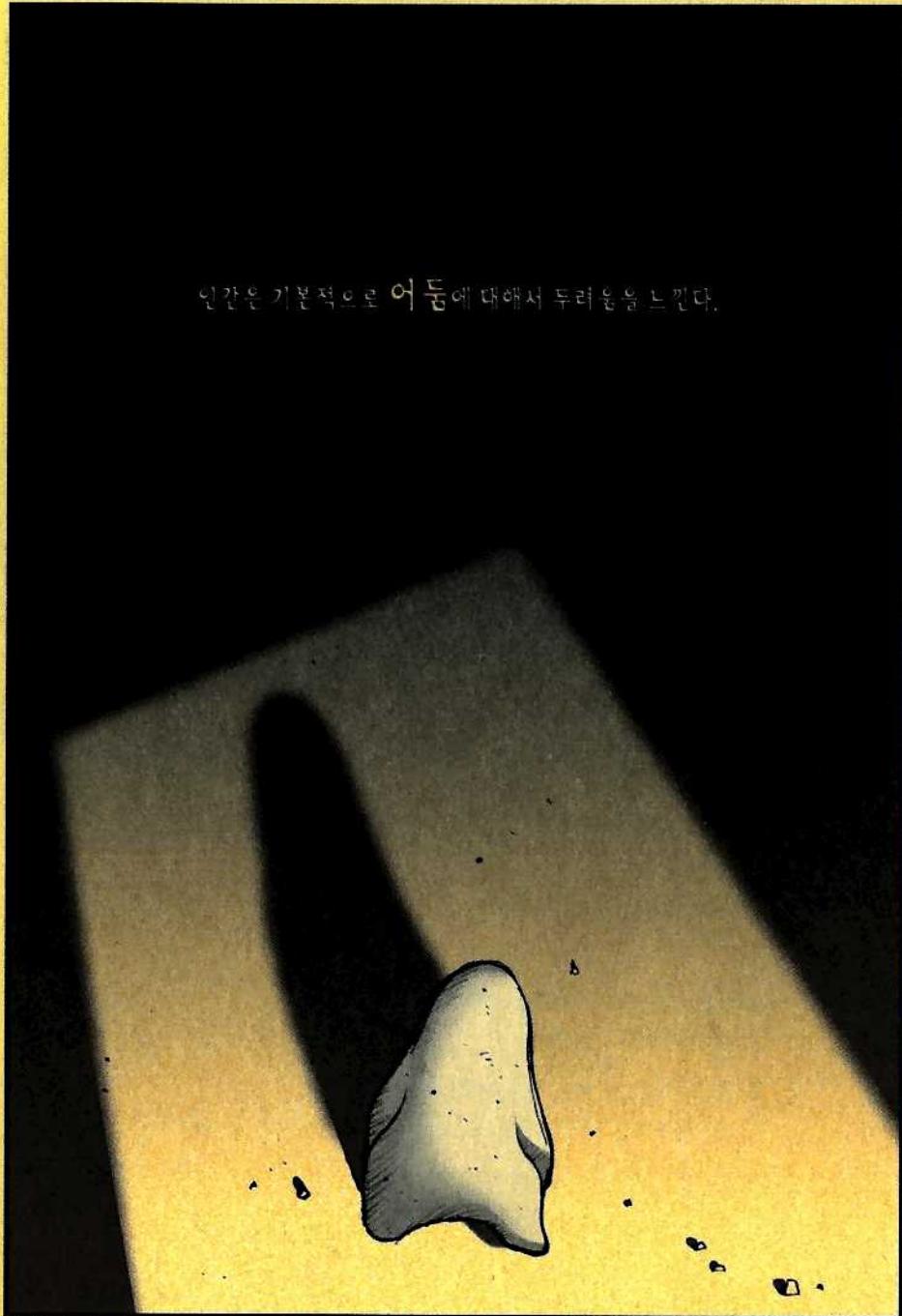
나는 살고 싶다 / 영희의 외출

❿ 베로니카의 2종 생활 –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_81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샤워할 시간 / 베로니카의 2종(전혀 다른)생활

❾ 현대판 마녀사냥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_89

현대판 마녀사냥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양들의 침묵 / 추축보도... 아니면 말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왜, 밝은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는 생겨나는 걸까?

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알 수 없음'으로 생겨나는 공포일 것이다.



어둠으로 인해 주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얕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어둠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해 '알지 못함'이 두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비록 칠월같이 어두운 둥글 속이라 할지라도 ...

불을 밝히는 순간,

딸깍 딸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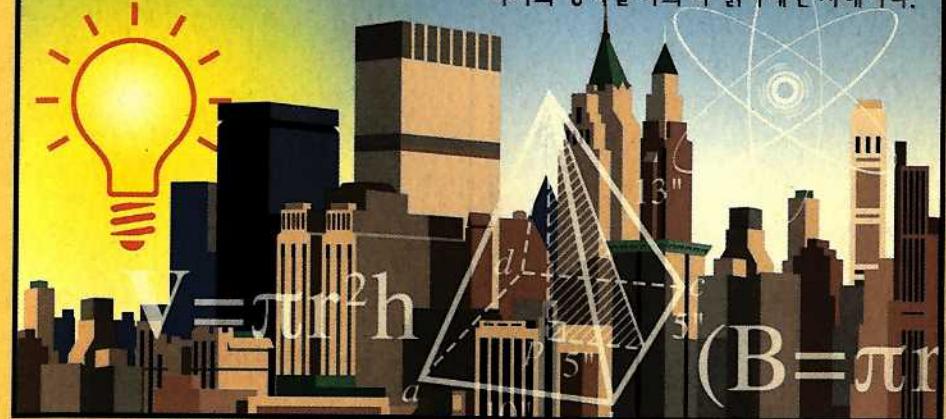


모든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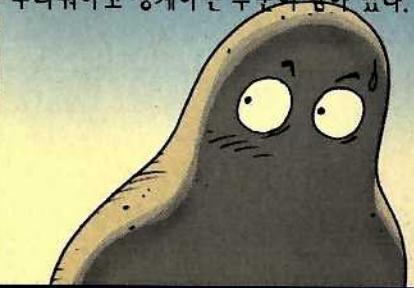
학



현대는 과학과 이성이라는 밝은 빛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미지의 영역을 거의 다 밝혀내는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옛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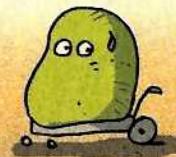


바로 내 주변, 내 이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나와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경계는 여전하다.



장애는 전염병도 아니고,
전생의 업보도 아니며, 원죄도 아니다.
단지 사고나 질병 혹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가중된 불편함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무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신화가 지배하던
고대사회도, 종교와 미신이 지배하던 중세
사회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성이 지배하는
밝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

장애에 대해서 막연히 경계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것은



장애가 아동 속에 묻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장애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잘 안보여...

혹시, 나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시야를 가린 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뚜꺼운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도록 하자.

쓰윽~

색안경을 벗는 순간, 보다 더 자유롭고
밝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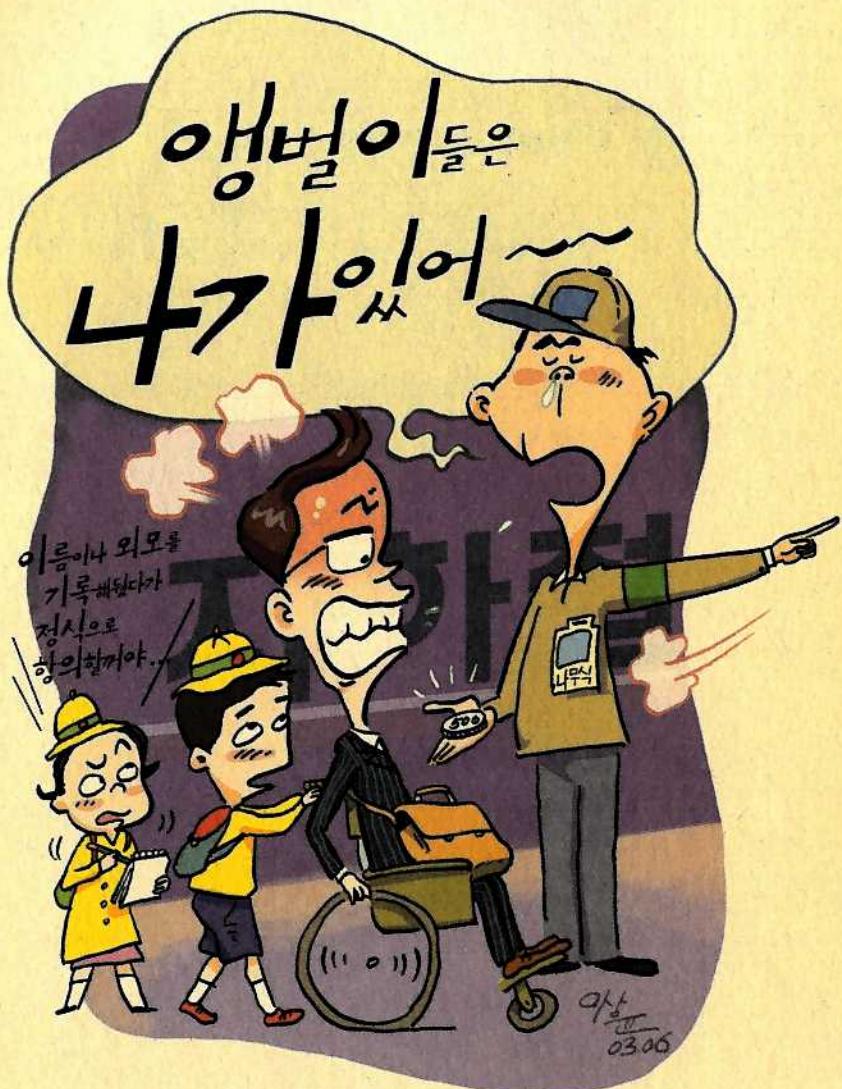
안녕.

01 무지에서 일어난 차별

휠체어? 그럼 앵벌이지!

휠체어? 그럼 앵벌이지!
넓게 쓰니까 따불로 내!
왜, 맨날 반말이야!

왜, 맨날
반말이야!



휠체어? 그럼 앵벌이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나씨는 평소 장애아동과 함께 현장학습을 나가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다. 그 날도 나씨는 장애아동들과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나씨 일행을 본 역무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역무원은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면 안 된다. 당장 지하철에서 내려라.”며 나씨를 다그쳤다. 전후사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나씨 일행을 소위 ‘앵벌이’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휠체어를 탄 나씨가 장애아동들을 테리고 있으니까 장애아동들을 앞세워 구걸이나 하는 사람쯤으로 오인한 것이다.

황당한 나씨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역무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화가 난 나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역무원은 그제야 한마디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돌아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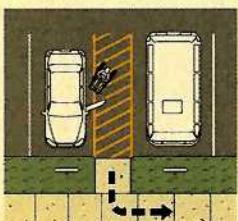
넓게 쓰니까 따불로 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아침저녁으로 걱정거리가 있다. 주차공간 때문이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 앉아야 하는 김씨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씨는 주차 후, 공간이 좁아 내릴 수 없었던 적도 많았고, 옆 차가 너무 바짝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까지 갈 수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정말 희소식이었다. 법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김씨의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생겼다. 이로써 김씨는 그동안의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김씨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주차장도 좁아 죽겠는데, 혼자서 두 대 공간을 쓰잖아, 당신 때문에 한대를 더 못 대니까 당신이 주차비 두 배로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몰랐던 관리소측은 두개의 주차장을 합쳐 장애인마크를 그려놓았다. 그것이 관리인에게는 부당하게 보였던 것이다. 이 관리인이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이’ 주차공간이 분배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는 차별임을 몰랐던 것이다. 때로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인데 말이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 17조에 의하면 법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사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 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5>

왜, 맨날 반말이야!

나는 전화통화를 할 때면 상대방에게서 종종 ‘보호자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얼마전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법률구조공단과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역시 반말로 상담하다가 보호자를 바꾸라고 했다.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니까 나와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가족에겐 이 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다” 해도 막무가내였다. 하는 수없이 나는 언어장애인임을 밝혔으나, 상대방측에서 “왜 자꾸 울면서 이야기하느냐? 말을 못알아 듣겠으니 보호자를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끊겠다”고 했고, 나는 결국 제대로 상담도 못하고 심한 모욕감만을 느꼈다.

— 서울 강서구 임씨 —



버스를 기다리는데 찌는 듯한 더위로 땀이 줄줄 흐른다. 위낙에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다, 버스까지 안오니 몸도 마음도 지쳤다. 드디어 기다리는 버스가 오고, 나는 버스에 올랐다. 빙자석으로 가려는데, 버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본 아주머니가 “쯧쯧쯧, 왜 힘들게 돌아다녀? 아이구, 땀 흘리는 것 좀 봐. 집에나 있지”

— 경기도 파주시 김씨 —

회사의 급한 일로 택시를 탔다. 마음은 급하고 길은 막히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대뜸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어디까지 가는데?”

— 경기도 안산시 조씨 —

32살의 나는 오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어디가? 어느 복지관에서 나왔어? 하나님은 믿어?”

마치 어린아이들 대하듯 하는 말투와 친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래, 힘내서 잘살아, 조심히 가, 에그...쯧쯧쯧...”

— 서울 동작구 최씨 —

식당에 가면 ‘어서오세요’라는 말 대신 듣는 말이 있다.

“어서와, 어디 앉을래?”

— 서울 은평구 이씨 —

사람들은 장애인에겐 나이도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02 _ 이동일 권리에서의 차별

목숨을 건 여정

Stairway to he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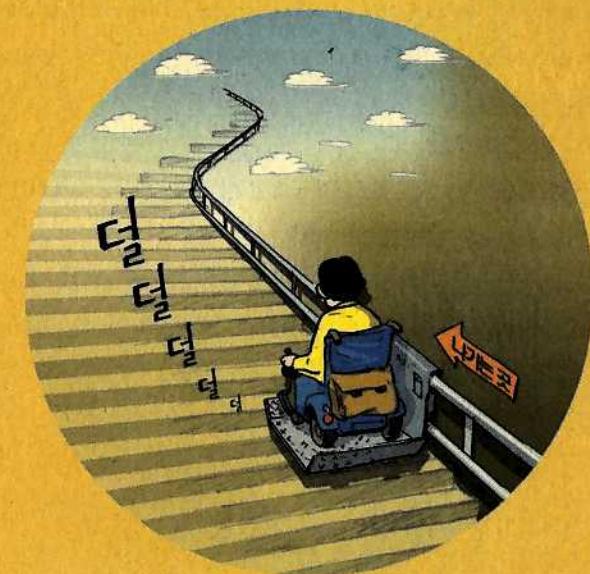
연쇄살인사건1

연쇄살인사건2

왜, 맨날
반말이야!

Stairway to heaven

지체장애 1급의 이씨는 출퇴근 할때 항상 리프트를 이용한다. 매일 그 역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가 하도 고장이 잦아 늘 고생을 한다. 특히나 날씨가 추운날은 정말 난감하다. 길에 세워두고 고치겠다고 한 시간 넘게 난리들이니 말이다. 매일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점검이 안되니 정말 안전사고가 걱정되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났다. 긴 계단에 있는 리프트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리프트가 서버렸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더니 역무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러더니 2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들어올려서 바닥에 내리자며 어설프게 들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휠체어 무게가 만만치 않자, 결국 119를 부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119대원들이 출동하여 계단 중간에 간신히 내릴수 있었다. 1시간 거리의 퇴근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버렸다.



지금 **지옥철**이 접근하고 있으니,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죽을 각오로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아아

연쇄살인사건 1

중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된 김씨는 버스를 탈수 없으므로 -버스번호를 확인할수 없으니- 항상 지하철을 이용한다. 오늘도 김씨는 외출을 하고 동네 지하철 역에 하차하였다. 차에서 내리니 물청소를 하는지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된 곳에 물통이며, 갖은 물건들이 있는 것이었다. 늘 다녔던 길로 다니는 것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구를 이용하라는 말에 김씨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쪽 출구로 걸어갔고, 길을 가던 중 발을 헛디뎌 지하철 철로에 떨어져 버렸다. 결국 김씨는 바로 둔 어온 지하철에 치이 사망하고 말았고, 지하철공사측은 김씨 개인의 잘못으로 철로에 떨어졌으니 책임이 없다며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의 가족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쇄살인사건 2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4학년의 최군은 등하교를 혼자 한다. 학교가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군은 어느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오지 않자 철로 끝에서 고개를 내밀고, 차가 오는지 살펴보다가 그만 **지하철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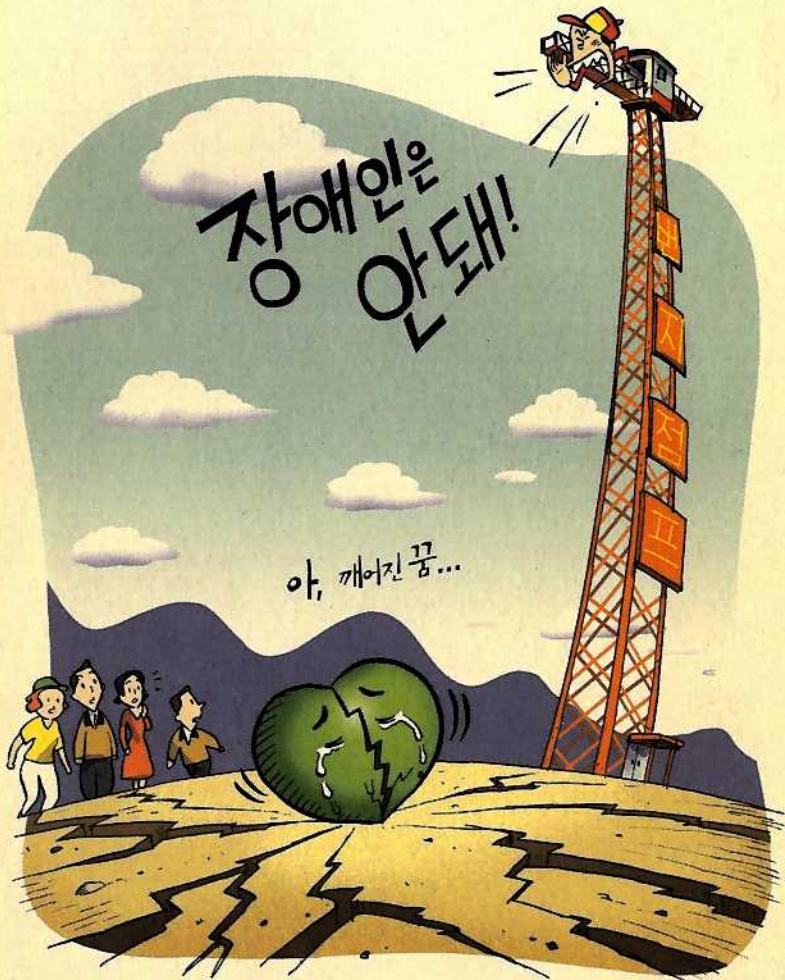
03 문화양유 권리에서의 차별

번지점프를 하다.
장애인만 빼고

깨어진 꿈

보호자분이 없으면 탑승이 곤란합니다

왜, 맨날
반말이야!



깨어진 꿈

뇌병변장애를 가진 오씨는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번지점프다.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질 때의 아찔함과 다시 뛰겨져 오를 때의 해방감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있다. 드디어 직장 야유회 날, 오씨는 야유회 장소로 분당의 율동공원을 고집했다. 그곳은 번지점프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평소 오씨의 마음을 아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신나는 상상을 하며 분당 율동공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잔뜩 기대에 찬 오씨의 마음은 일순간 맨땅으로 추락했다. 번지점프 관계자가 장애인은 무조건 안된다며 이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전이 뭐 어쩌구 하면서 말이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봤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그토록 원했던 오씨는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구경만 했다. 오씨는 “줄 끊어진 번지점프에서 떨어진 것처럼 견고한 편견의 바닥에 부딪히는 짐짓” 이었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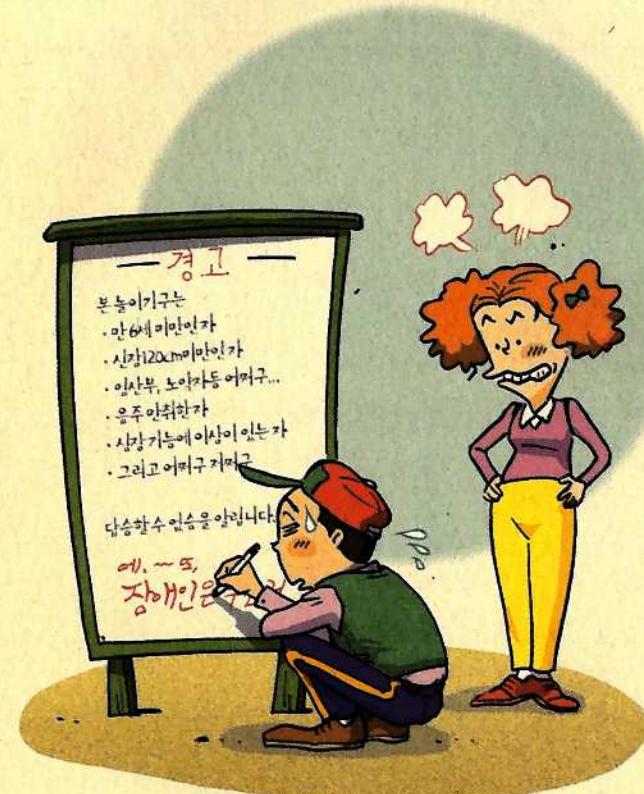
보호자 분이 없으면 탑승이 곤란합니다!

보호자... 내가 어렸을 적 지겹도록 많이 듣던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신문 값이나 우유 값을 낼 때부터 시작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입학시험을 보거나 원서를 쓸 때, 거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 등등... 내가 미성년이던 시절, 내 모든 결정과 선택 과정에 있어서 **보호자**라는 존재는 항상 꼬리표처럼 나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스무살이 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보호자**라는 존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순전히 내 스스로의 몫이자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혹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뇌병변장애를 가진 친구 경아와 에버랜드에서 있었던 일은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높은 계단을 깅낑거리며 올라갔고, 신나는 기분으로 놀이기구 탑승장 앞까지 갔는데, 그곳의 직원이 경아를 보자 대뜸 “**보호자 분이 없으면 탑승이 곤란합니다!**”라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이다.

‘허걱, 이럴수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했고, 놀이기구를 탈때까지 끝끝내 비키지 않았다. 결국, 몸은 지쳤으나 마음은 신나게 탈수 있었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끝까지’라는 교훈이 남았다.



04 소비자 권리에서의 차별

잇속, 장삿속 혹은 돈독(毒)

의적거절

손님 떨어져!

귀찮으니까 얼른 해줘버려!

왕(王)짜증 의사

왜, 맨날
반말이야!

의적거절

뇌병변장애를 가진 조씨는 웹마스터로 일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는다. 언젠가 보험에 가입하긴 해야지 생각하던 차에, 아는 후배의 소개로 보험모집인을 만났다. 보험내용을 들어보니, 타사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되어 프루덴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후 첫보험료 16만원을 냈고, 한 달 뒤 조씨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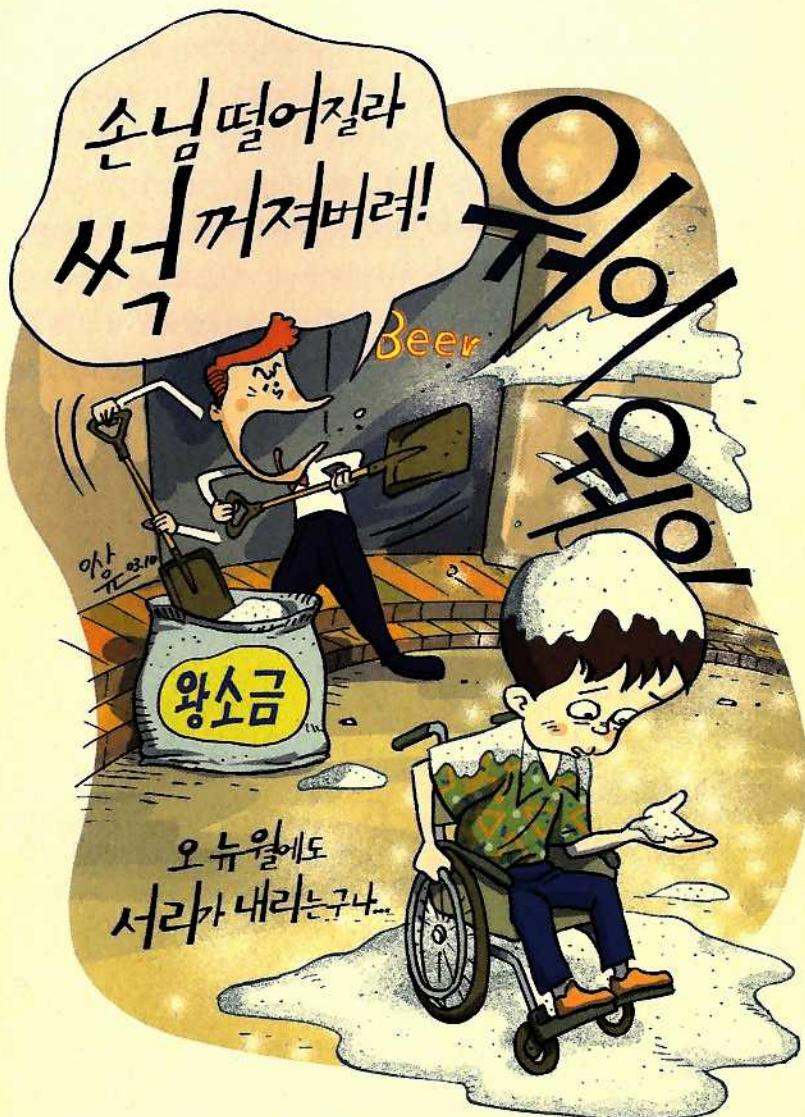


이름하여 ‘보험청약거절통지서’가 날아온 것. 그 이유에는 ‘의적거절’이라고 써여 있었다. 즉 의료적인 이유로 거절한다는 뜻이다. 그는 모집인에게 그의 장애가 보험계약 거절의 이유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다. 뜻밖의 상황에 참을 수 없었던 조씨는 이유를 듣고 싶었으나 보험회사는 ‘내부규정상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타회사에 알아본 결과, 장애인은 보험가입의 인수제한금지항목에서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가입불가의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장애인이 보험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발생율이 높다는 통계는 조사되지 않았다. 결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도 보험회사의 자유계약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못했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 자유가 누군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분명한 제한을 가진다.

– 조씨의 소송 내용 중에서 –



손님 떨어져!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을 찾았다. 그러나 빈 자리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분명 자리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실랑이 하기 싫은 마음에 그냥 다른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네번째 가게에서 겨우 자리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맥주 한잔의 시원함을 가지려했던 기대는 이미 식힐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차 버린 되였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이 불쾌한 기억은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가는 가게마다 거부당하는 일들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거부'라는 방식의 차별이다. 이런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차별이란 '편견=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내 안에 사전에 주입된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곳의 호프집 주인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세 곳 모두 항의전화를 했을 때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겠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왜 하필 토요일이냐, 평일에 오면 안주를 더 줄 수도 있다. 장사하는 우리 입장장을 이해해 달라.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자신들의 적나라한 편견을 드러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마무리지만, 장애를 차별하는 편견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귀찮으니까 얼릉 해줘버려!

서울의 모 정신지체 생활시설에서는 지역사회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은행을 이용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하면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용돈관리를 한다. 하루는 자원활동가와 함께 두명의 장애인이 은행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창구에 서니, 창구직원이 하는 말. “이런 푼돈을 가지고 일일이 창구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월말이라 바쁜데..... 웬만하면 카드를 좀 이용해 주세요.” 월말이라 바쁜 건 알겠지만 도대체 푼돈은 돈도 아니란 말인가? 게다가 말투며 표정에서 역력히 드러나는 짜증은 상대방을 당황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는 카드이용에 아직 익숙치 않다고 설명했는데, 옆의 직원은 한마디 더 했다.

“야,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해줘 봤자 귀찮아 지니까
그냥 얼릉 해줘버려” 너무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은행 업무는 처리됐고, 다음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이후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은행의 행동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결국 지점장과 직원은 정신지체 생활 시설을 방문하여 사과하였으며, 전 직원이 장애인권교육을 받았다.

왕(王)짜증 의사

설명 한마디 없이 그냥 처방전만 써주는 의사선생님.

“선생님, 제가 왜 아픈가요?”라고 묻자,

“나가서 수납하시고 약 드시면 낫습니다.”라며 입을 꾹꾹 닫아버린다.

왜 내 돈 내고 내가 주눅 들어야 하는지... 나원참.

‘소비자가 왕(王)’인 세상. 왕은 바뀌어도

의사는 여전히 그 왕을 치료하는 의사선생님 일뿐이다.



05 교육권에서의 차별

장애를 위한 기도

배움의 길에 나이는 있다(?)

장애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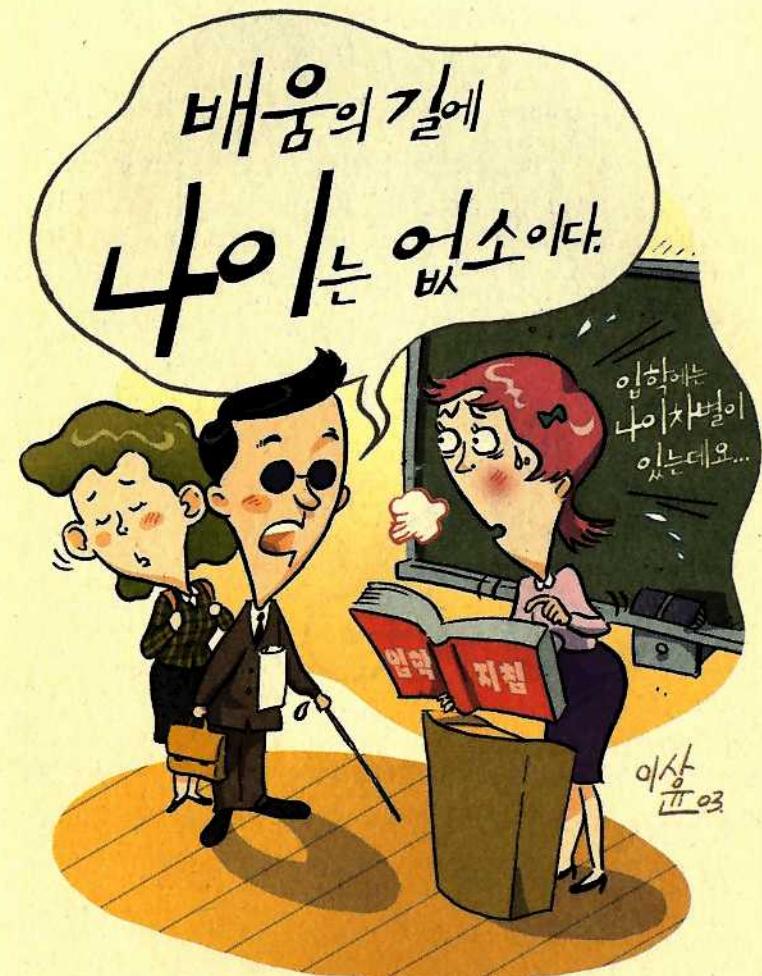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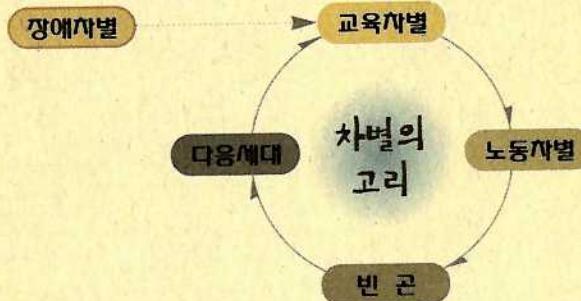
비워 약한 선생님

왜, 맨날
반말이야!

배움의 길에 나이는 있다(?)

김(남, 42)씨를 포함한 시각장애인 4명은 전남 영암소재 은광학교(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를 비롯한 4명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학교장과 감독기관인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조사 중, 전라남도 교육청은 나이제한 지침을 자진 폐지하고 입학을 허용했다.

나이차별과 장애차별, 서로 상관 없어보이는 이 두 가지 영역의 차별은 자세히 알고 보면 깊은 연结고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했고,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이것이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빈곤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니, 이 고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



장애를 위한 기도

서울의 모초등학교 교사는 아침수업 시작 전에 발달장애를 가진 김군만을 앞으로 불러내어 꼭 껴안고 기도를 시작한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이다.

주여, 아이들이 떠들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떠들면 김군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 아이들이 제발 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저의 말을 안 들으면 김군의 장애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이들이 착하게 살게 하소서.....



김군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민망하고 어떻게 교사가 저렇게 장애에 대해서 모를 수 있나 한심하기도 했다. 결국 어머니는 매일 아침 담임교사의 기도를 도저히 들을 수 없어 특수학교로 전학을 해버렸다.

「비위 약한 선생님」은 지난 2003년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당시 말기를 거부한 이 사건은 다운부모회가 나서서 교사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을 통해 입학만 허용해서는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비위 약한 선생님

우리딸 지연이가 2학년으로 올라간 첫 날, 저는 무척 떨렸습니다. 우리 지연이의 새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분명 좋으신 분일꺼야.

운동장 조회 후 교실 안, 선생님께서 새로 만난 소감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던 지연이가 새로운 교실에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뒤로 가서는 소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끄러워질까봐 저는 소고를 빼앗았고, 지연이는 싫다고 하면서 1분 가량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집에 가고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선생님의 첫마디는 보셨죠, 어머니?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무는 맘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순간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지난번 담임선생님처럼 못해줍니다. 사실 제가 비위가 톱 악하거든요. 평소 시간에 저 담임이 예 코를 냉여주는 것을 보고 제가 배울 뜻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님정은 이해하겠지만 그로 이해 다른 아이들 누엄에 피해주는 것은 왜 생각 안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돌으니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지연이가 제가 반이 될까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거칠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양

라고 말하고서는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혀둥지동 나와 버렸습니다.

06 노동할 권리에서의 차별

인력시장

사회복지학의 이율배반학

장애인을 고용한 어느 사용자의 고민

업무는 정규직, 임금은 일용직

배려가 더 무섭다

인력시장

불을 밝혀라

왜, 맨날
반말이야!



사회복지학과의 이율배반학

나 스스로 우리 사회의 소수인,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빼자리게 느끼게 한 사건은 모대학 교수임용에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대학에 지원하고 이사장, 총장 면접 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스스로 학력이나 경력, 연구 실적에서 자신이 있었던지라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을 했고, 그리고 임용결정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받은 후, 내 신체검사상의 수치 때문에 임용은 취소되었다.

내가 등록장애인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임용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5조 채용금지 조항에 의하면,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수 없으나 등록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학교 측에 얘기했지만, 학교측은 사립학교는 공무원과 다른 자체 학교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내가 등록장애인이 되면서 설마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전공이 사회복지이고, 내 교수임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들이었다는 점이다. 바로 내 장애를 이유로 말이다. 임용이 취소되면서 나 자신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했고, 또 주위에 장애인복지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다. 장애인복지를 전공하는 몇몇 친구 및 후배들과 논의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를 상대를 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모교수의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그 이후 중에서 -

이후 이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각 언론에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순회배상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소송 종 학교측의 합의요구로 교수로 임용되었다.

장애인을 고용한 어느 사용자의 고민

요즘처럼 인력이 남아도는 세상에
왜 하필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단 말인가.
값싼 동남아 인력도 넘쳐나고 중국 동포도 천지인데
그리고 고학력 취업대기자들이 목을 빼고 우리만 쳐다보는데
왜 하필 께름직하게 장애인인가 말이다.

...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시대다.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비정한 정글의 법칙을 그들은 왜 몰라주는가.
자신들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대기업에서도 명퇴다 뭐다해서 줄줄이 쫓겨나는 마당에
왜 그들은 고용해준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물에 빠진 사람 견줘줬더니 보따리 내노라는 식이다.
입다물고 주는 월급이나 받아가면 됐지
도대체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요구는 죄다 하고 있으니...
그걸 다받아주자니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되고
그렇다고 헛아내자니 주위의 눈치가 귀찮고.
아!~ 정말이지, 기업하기 힘들다.
나도 그냥 학.
중국으로 옮겨버릴까?



임무는 정규직, 월급은 일용직

나는 신장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연구원에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임명되자마자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충분한 연구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헬액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았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월급은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내가 출근한 일수로 결정되었다. 내가 출근하지 못한 날들도 열심히 연구결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배려가 더 무섭다

나는 직장에서 17년을 넘게 근속하면서 한번도 병결, 조퇴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늘 더 노력했고, 늘 인내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체 회사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내가 일하는 부서를 4층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부서장은 내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1층의 다른 부서에 책상을 갖다놓고 일하라"고 했다. 나는 "힘들어도 4층에서 근무하겠다, 어떻게 우리 부서 일을 다른 팀에서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상사는 몹시 불쾌한 목소리로 "불편한 몸으로 사과박스 하나 들지 못하면서, 4층까지 오기는 게 가능하나? 사고라도 나면 본인이 책임지겠느냐?"며 나를 1층에서 근무하도록 종용했다. 그동안 나보다 경력이 낫은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며 켜켜히 쌓이는 아픔은 그냥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는데, 이젠, 결국 나보고 나가라는 말인가? 회사는 17년 동안 나의 노력과 헌신을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묵살해버렸다.

인력시장

일하고
싶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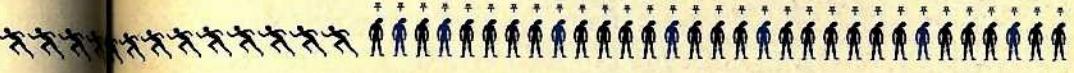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일하고
싶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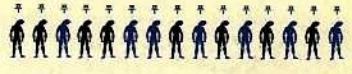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일하고
싶은 사람?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일하고
싶은 사람?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너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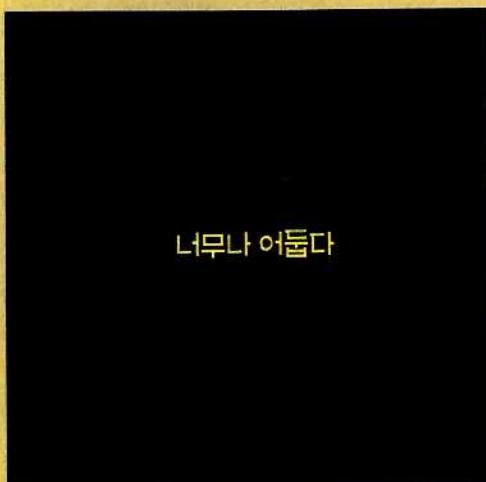
그냥 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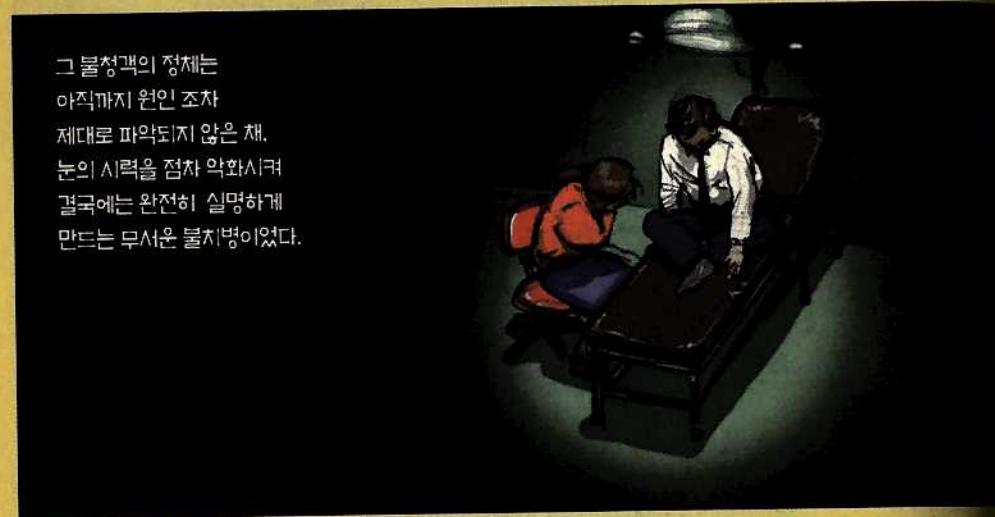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실업율**은 비장애인의 약 7배 (6.8배)에 달한다.

- 2000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불을 밟혀라!







하지만 일자리를 내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수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나는 그 퍼시아 비로스
제단에 되었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나는 그 편견과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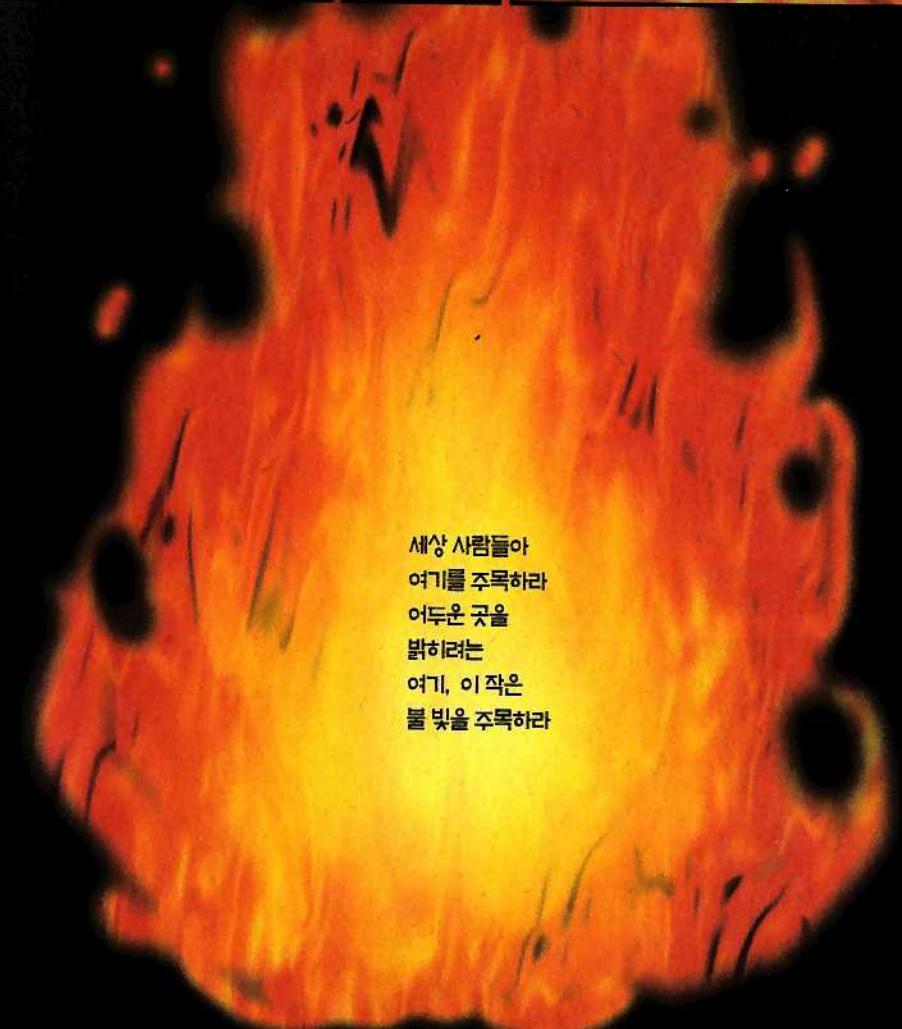
이 화를 불을 밝혀 그 어둠을 밀어내는
불씨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빛을
잃음으로써
소중한 것을
하나 얻었다.



신체적 조건 때문인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무관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아
여기 빛을 주목하라
어두운 곳을
밝히려는
여기, 이 작은
불 빛을 주목하라

07 _ 참정권에서의 차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참정권

시설에서의 대리투표

왜, 맨날
반말이야!



빼앗긴 참정권

일가족이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다. 투표소는 2층에 있었으며 활체어를 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의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족의 힘만으로는 활체어를 탄 사람이 오르기가 어려워 가족 중 한 사람이 선거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내년에나 하세요!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요?” 라며 도움을 거절했다. 화가 난 가족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모두 돌아와 버렸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투표소 환경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선관위위원장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였지만, 결과는 ‘혐의의 없음’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국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형사고발에서 기각되었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기에 2000년 6월 투표소의 물리적 불편함으로 투표를 포기한 원고인단 8명을 모집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각각의 원고인들에 1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액수는 적었지만, 이는 선거편의대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시설에서의 대리투표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음성군 도의원 후보로 나선 김씨는 꽃동네가 수용자들을 이용, 상대편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자신이 상대편 후보보다 500여표를 앞서 가지고 있었는데, 꽃동네 부재자 투표함을 열자마자 결과가 뒤집혀 결국은 11표 차로 낙선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꽃동네 내부의 부재자 투표자는 모두 950여명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음성군 지역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꽃동네측이 정신지체 장애인 등 부재자 투표권자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군민 주권찾기 집회'는 계속해서 열렸다. 꽃동네의 부정투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단 음성군민의 주권을 유린한 것 뿐 아니라 내부 수용자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마저 가로막은 셈이 된다.

– 함께걸음 2003년 3월호 '꽃동네 이대론 안된다' 오마이뉴스 김영균기자 –

음성꽃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꽃동네측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꽃동네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부재자투표를 시행했다. 꽃동네에 살고있는 약 2,200명의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중 950명의 투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대리투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08 영사상 권리에서의 차별

제복의 공포

제복의 공포

니가 다해요(조사관=대독자=도장찍는 사람)

왜, 맨날
반말이야!



제복의 공포

최군의 하루 일과 중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는 곳은 '오락실'이다. 자폐장애를 가진 최군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할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없었기에 최군은 마치 출퇴근 하듯 오락실을 타닌다. 최군은 오락할 때만큼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어느 날 최군은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했다. 형사 3명이 최군을 다짜고짜 연행을 해간 것이었다. 최군이 소매치기 범으로 몰려 현장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으로 연행되었다. 뒤늦게 그걸 안 부모님이 경찰서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나 있었다. 조서에는 최군이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5가지 추가 사건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형사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놀린 최군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최군은 '혐의 없음'이 판정 나 최군의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 일은 최군과 가족들에게 절은 상처를 남겼다. 최군은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실 근처에 다시는 가지 못했고,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공포에 떤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사받을 때는 보호자나 변호인이 꼭 참석하여야 한다.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서와 형사들의 위압적 분위기, 여죄추궁, 진술강요, 협박 등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결정적인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현 수사관행이 바뀌기는 힘들다.



나가 다 해요 (조사관 = 대독자 = 도장찍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가진 임씨는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되었으나,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동업자와 임씨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임씨는 몹시 꺼림직했다. 왜냐하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이니 가족이나 친구를 부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당했기 때문이었다. 임씨가 가족을 찾은 것은 자신의 주장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은 것은 아니라, 조서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대신 확인해 줄 대독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무시당한 채 조사는 진행되었고, 형사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자신이 읽어주며 '맞느냐'고 물어봤다. 그리고서는 임씨의 손을 끌어당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징계했다.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조서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무시당한 채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다.

이는 시각장애인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도 믿을 수 있는 통역인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찬가지이며, 언어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 형사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어려움을 가진 정신적 장애인, 의사소통(말과 글)의 어려움을 가진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09 _ 신체자유 권리에서의 침해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영희의 외출

왜, 맨날
반말이야!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を持つ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아동권리협약 제6조 -



나는 살고 싶다

두 살 난 장애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한 비정의 아버지가 석달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주씨는 지난 2003년 6월 17일,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2살난 딸이 **욕실에 넘어져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온몸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CBS뉴스 2003년 10월 9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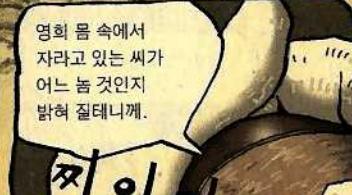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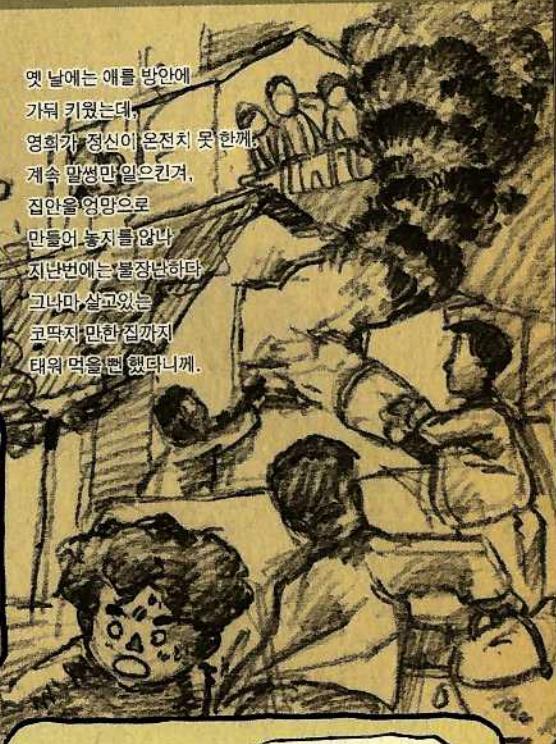
서울 용산경찰서는 2003년 10월 18일 전모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2일 오후, 용산구 자기 집에서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20)의 **산소호흡기** 전원을 꺼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세계일보 2003년 10월 20일 -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 아들은 숨지고 본인도 중태에 빠졌다. 2003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남 보령의 H콘도에서 홍모씨와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홍씨의 아들(5)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들은 이미 숨진 뒤였으며, 극약을 먹은 홍씨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 한국일보 2003년 10월 29일 -





사정이 그런디 주변에서 가만 있었겠어? 이웃 사람들이 영희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영희를 밖에 내놓고 키우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항의를 하겨.



그런데 대놓고 본께, 아 굴씨.
평소 못지도 않고 말도 없던
애가 웃기도 잘하고 말도
곧잘하고 활潑, 건강해진 거.
그래서 부모도 기둬놓는 것보다는
대놓는 게 예한데 좋다고 생각한 거.
또 자들도 신경안써서 좋구



썩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뭐하는감?!
저런 애 하나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디.

다 필요 없다니께!

옛날에 다같이 못살 때가 좋았당께,
그때야 없이 살아도
서로 듣는 인정이라도 있었제.....



왜, 맨날
반말이야!

10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베로니카의 2중 생활

전혀 다른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샤워할 시간

베로니카의 2중(전혀 다른)생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강원도 정선의 미신고 시설에서의 일이다. 어느 특수교사의 제보로 가게 된 그 정선의 시설은 도저히 인간이 살 곳이라는 여길 수 없는 곳이었다. 돼지사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5·60년대 전쟁 후 사진에서나 보는 그런 가건물에 빽빽각은 머리, 한 여름인데 입고 있는 겨울 내복, 짙은 무릎 상처와 묶인 손목 자국들, 점심으로 먹는 과자.....

우리는 마치 입소상담을 하는 듯 들어 갔었는데, 처음 들어갈 때 5천만원을 내던지, 월30만원을 내든지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시설에 들어와 있는 동안 가족이 연락을 끊을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으니, 시설 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없다.

우리가 고발취재를 하러 갔는데도 도저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들이 더욱 당황스러웠다. 입술의 상처마지를 손톱깍기로 잘라버리고, 과자를 주면서 새모이 주듯 바닥에 뿌리거나 입에 쑤셔 넣어주는 관리아줌마 그리고 낮부터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도와주는(?) 아저씨, 방안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도 누구하나 해결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아동과 청소년 40여 명은 그렇게 수 년째 살고 있었다. <계속>

샤워할 시간

그러나 시설원장은 “내 아들도 이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하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실제로 중증의 정신지체를 가진 원장의 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부를 뒤져본 결과, 그동안 착복한 후원금과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근처의 땅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원장은 아들을 방패막이로 자신의 부정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 누구 하나 자신이 받는 학대를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었다. 우연히 오게 된 특수교사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몇십년이고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감독이 있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지역 경찰관과 공무원의 태도였다. 경찰관 월, “어휴, 좋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미신고시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결국 시설은 폐쇄되었고 시설장은 구속되었으며 아이들은 다른 시설들로 보내졌다.

이 일을 통해, 전국에 천여개가 넘는 미신고 시설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조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태도는 아직 크게 변한 것이다. 지금도 소위 ‘좋은 일’이라는 허울 속에 수십 수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신고 시설, 기도원 등에 갇혀지내고 있으니, 하루빨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기 바랄뿐이다.

미국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뉴욕 거리에 나왔다.



거리를 돌아보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비를 본 장애인들이 불현듯 옷을 벗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옷이 젖을까봐 벗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천정(=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곧 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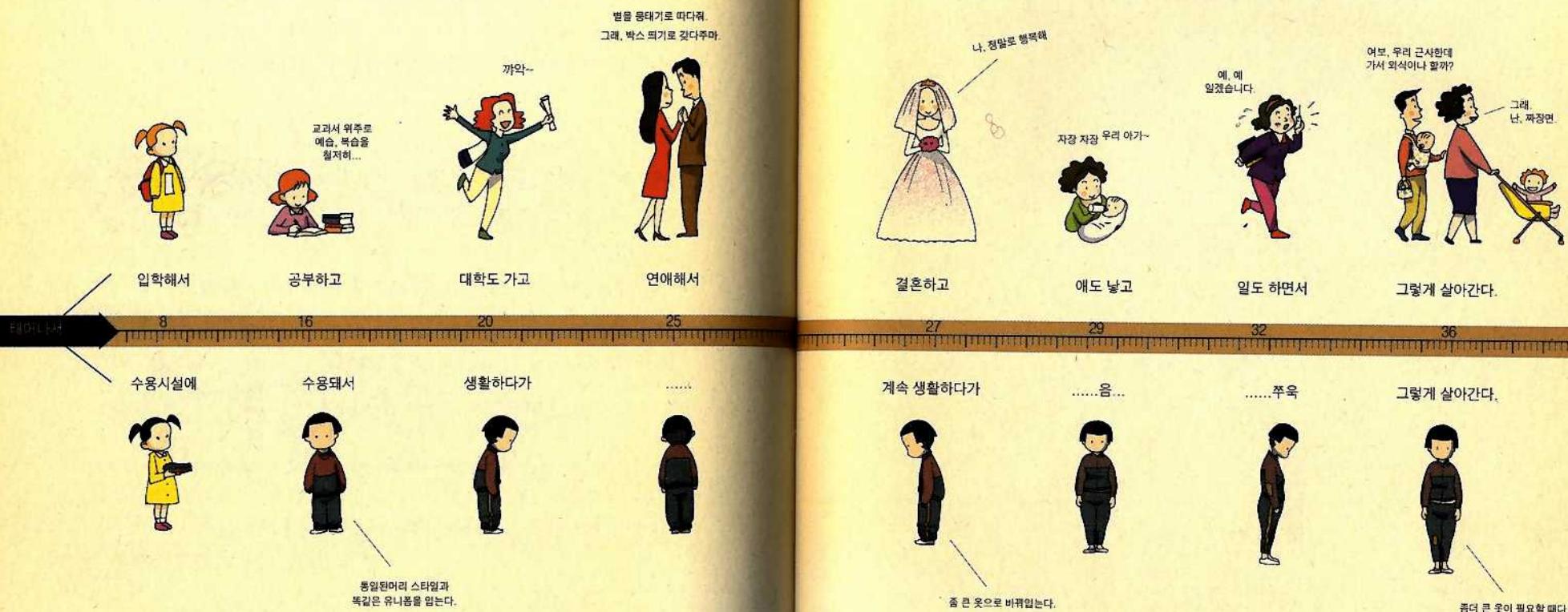


평생 시설에서만 생활하던 그들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를 시설내 샤워실에서 알고는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베로니카의 2중 생활

전혀 다른

베로니카의 2중 생활



현대판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양들의 침묵

추측보도... 아니면 말고

왜, 맨날
반말이야!



현대판 마녀사냥

서울 한 아파트에서 연판장이 들었다. 아파트에 사는 정신 장애를 가진 김씨가 '유아 성추행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 대다수는 김씨가 진범일 것이라며 너도 나도 서명을 했다. 평소 품행이 단정치 못한 김씨와 한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싫었던 주민들은 진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 박양의 부모가 나서서 김씨를 변호하고 다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을 목격한 동네 아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범인은 키가 작고 뚱뚱한 나이든 아저씨였다고 했는데 반대로 김씨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던 것이었다. 또 한 경미한 정신장애를 가졌던 김씨는 위낙 동네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 이전부터 김씨를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김씨를 몰라볼리가 없었던 것이다. 박양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명내용은 재판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김씨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떠한 누명을 쓴지 알지 못한 채 목격자 진술과 자신의 의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판사 앞에 서야만 했다.

결국, 그 연판장은 사건의 진범과 그 측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김씨에게 덮어씌우려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김씨는 자칫 현대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육지에는 수많은 괴물과 도둑들이 들끓고 있어요. 안전한 바닷길로 가세요.”

사람들은 바닷길을 권했다. 하지만 젊은 테세우스는 영웅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는 저 유명한 헤라클레스처럼 도둑과 괴물들을 물리쳐 유명해질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도둑과 괴물들을 물리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이다. 프로크루스테스란 이름은 ‘늘리는 자’ 란 뜻이었다. 그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원래의 이름은 폴리페몬으로 다마스테스(조련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앗티카 지방에 살았다. 그는 자기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 쇠침대 위에 누이고 결박했다. 그리고는 여행자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여 침대 길이에 맞추고, 반대로 몸이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버렸다.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그가 여행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다.

— 그리스로마 신화 중에서 —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및 「프로크루스테스 체계(Procrustean meth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관용구로 쓰인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일방적 기준으로 ‘정상인’ 이란 개념을 만들어내고, 기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낙인화한다. 정상사회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금, 경리의 역사는 중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을 악령, 마녀, 미친자라 하여 화형, 살인, 감금하는 광기의 역사는 방식만 달리할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진정 우리 사회에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일까?



양들의 침묵

렉터박사(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주인공)를 만드는 업기적인 매스컴.

한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양들의 침묵'. 우리가 이 영화를 주목하는 것은 하니발 렉터 박사에 대한 잘못된 설정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면서 범죄심리전문가 그려면서 정신질환자이고 동시에 9명이나 죽인 살인자. 과연 이런 설정이 타당한 것일까? 영화의 내용이 광선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정신장애 = 범죄자'라는 공포의 동식이 강하게 각인되었다.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는 광선이 아닌 현실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잘못된 정보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묘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격리시키고자 하는 요구의 이면에는 이런 잘못된 매스미디어의 시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추측보도.... 아니면 말고

정신장애에도 경증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른바 '정신이상자' 내지는 '정신장애인'으로 통칭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조장한다. 이같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 2002년 11월 3일 KBS방송국 9시 뉴스에서는 "개구리소년 보도"

앵커 : 대구 개구리소년들의 사인이 타살로 결론남에 따라서 이제는 과연 누가...
 기자 : 법의학팀의 분석대로라면 ...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수 : (총략)...따라서 정신이상자나 성격이상자가...
 기자 : 경찰은 이에 따라 실종 당시 대구 일대의 정신이상자와 연총, 공기총 불법소지자를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2003년 2월 18일 KBS방송국 9시뉴스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보도"

기자 : 뚜렷한 동기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어떤 자신의 신병을 기관 화풀이성 방화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씨가 이전부터 정신병력을 앓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 오늘 범죄도 우발적으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뭐, 막말로 나죽고 모두 한꺼번에 죽자는 그런 심정으로...

앵커 : (끼어들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말하십니까?
?

105

왜, 맨날 반말이야!

글 / 김정하
그림 / 이상운

나온날 2003년 11월
펴낸곳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펴낸이 이성재
편집 김정열
기획 박옥순, 임소연
제작 젊은기획 02) 2264-2015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 521-5364 / 팩스 02) 584-7701
www.cowalk.or.kr / cowalk@cowalk.or.kr

◆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책자는 국정홍보처 「2003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